

2024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 관단체 고시

<목 차>

1.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의 지정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작 성 자	이름	조영광
	담당부서 (과)	재산심사관리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이은영		연락처	044-201-8567
	과장	이현옥		이메일	mindtomind@ mail.go.kr

2023. 11. 20. 작성

정책 책임자 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의 지정								
	2.규제조문	2024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고시								
	3.위임법령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3호, 제5항제20호 및 제6항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3.11.22~2023.12.11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 직원 등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에게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21.10.2. 시행) 개정 - 개정법에서 위임한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구체화하고, 이에 따라 2021.10.2.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를 고시하여 적용 대상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함 - 금번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고시는 해당기관 및 감독기관에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변동사항을 조사(’23.9.15.~10.27.)한 결과에 바탕하여 3개의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함 * 구미도시공사, 대구정책연구원, 광주연구원(기타 3개는 명칭 변경 등) 								
	7.규제내용	-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의 지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부동산 유관부서)의 임직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유형</th> <th>인원수 또는 규모</th> </tr> </thead> <tbody> <tr> <td>피규제자</td> <td>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부동산 유관부서)의 임직원</td> <td>9000여명</td> </tr> </tbody> </table>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부동산 유관부서)의 임직원	9000여명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부동산 유관부서)의 임직원	9000여명								
9.규제목표	○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의 이해충돌상황을 방지하고, 공직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사전에 예방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재산등록 - (편익)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공직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사전에 예방하여 공직에 대한 국 								

		민의 신뢰 제고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이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이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설정	제3조	신규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재검토행	2024.01.01~2024.12.31	1년		
	13. 우선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인사혁신처고시 제2022-14호</p> <p>2023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고시</p> <p>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의2 및 제1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3호, 제5항제20호 및 제6항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공직유관단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2년 12월 30일 인사혁신처장</p>		<p>◎ 인사혁신처고시 제2023-14호</p> <p>2024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고시</p> <p>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의2 및 제1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3호, 제5항제20호 및 제6항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공직유관단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3년 12월 29일 인사혁신처장</p>		
구분	기관·단체명	구분	기관·단체명	
1.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공직유관단체	1	강원도개발공사	1	강원개발공사
	2	경기주택도시공사	2	경기주택도시공사
	3	경남개발공사	3	경남개발공사
	4	경상북도개발공사	4	경상북도개발공사
	5	광주광역시도시공사	5	광주광역시도시공사
	6	대구도시공사	6	대구도시공사
	7	대전도시공사	7	대전도시공사
	8	부산도시공사	8	부산도시공사
	9	서울주택도시공사	9	서울주택도시공사
	10	울산광역시도시공사	10	울산광역시도시공사
	11	인천도시공사	11	인천도시공사

현 행		개 정 안	
	12 전남개발공사		12 전남개발공사
	13 전북개발공사		13 전북개발공사
	14 충북개발공사		14 충북개발공사
	15 충청남도개발공사		15 충청남도개발공사
2.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제20호에 해당하는 공직유관단체	1 (재)대구경북연구원	2.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제20호에 해당하는 공직유관단체	1 (재)부산연구원
	2 (재)부산연구원		2 (재)전북연구원
	3 (재)전북연구원		3 (재)충남연구원
	4 (재)충남연구원		4 강릉관광개발공사
	5 강릉관광개발공사		5 강원연구원
	6 강원연구원		6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7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7 경기연구원
	8 경기연구원		8 경기평택항만공사
	9 경기평택항만공사		9 경남연구원
	10 경남연구원		10 고양도시관리공사
	11 고양도시관리공사		11 공무원연금공단
	12 공무원연금공단		12 과천시공사
	13 과천시공사		13 광명도시공사
	14 광명도시공사		14 광주도시관리공사
	15 광주도시관리공사		15 구리농수산물공사
	16 광주전남연구원		16 구리도시공사
	17 구리농수산물공사		17 구미도시공사
	18 구리도시공사		18 국가철도공단
	19 국가철도공단		19 국립공원공단
	20 국립공원공단		20 국방과학연구소
	21 국방과학연구소		21 국방기술품질원
	22 국방기술품질원		22 국토연구원
	23 국토연구원		23 군포도시공사
	24 군포도시공사		24 김포도시관리공사
	25 김포도시관리공사		25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6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6 남양주시공사
	27 남양주시공사		27 부산항만공사
	28 부산항만공사		28 부천도시공사
	29 부천도시공사		29 서울연구원
	30 서울연구원		30 성남도시개발공사

현 행		개 정 안	
31	성남도시개발공사	31	세종도시교통공사
32	세종도시교통공사	3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3	수원도시공사
34	수원도시공사	34	시청자미디어재단
35	시청자미디어재단	35	시흥도시공사
36	시흥도시공사	36	안산도시공사
37	안산도시공사	37	안양도시공사
38	안양도시공사	38	양주도시공사
39	양주도시공사	39	양평공사
40	양평공사	40	여수광양항만공사
41	여수광양항만공사	41	용인도시공사
42	용인도시공사	42	울산항만공사
43	울산항만공사	43	의왕도시공사
44	의왕도시공사	44	인천국제공항공사
45	인천국제공항공사	45	인천항만공사
46	인천항만공사	46	재단법인경북연구원
47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47	재단법인광주연구원
48	재단법인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48	재단법인대구정책연구원
49	재단법인 울산연구원	49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50	재단법인 인천연구원	50	재단법인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51	재단법인 제주연구원	51	재단법인 울산연구원
52	재단법인 충북연구원	52	재단법인 인천연구원
53	재단법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	53	재단법인 제주연구원
5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54	재단법인 충북연구원
5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55	재단법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
56	주택도시보증공사	56	전남연구원
5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58	지방공기업평가원	58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59	춘천도시공사	59	주택도시보증공사
60	통영관광개발공사	6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1	파주도시관광공사	61	지방공기업평가원
62	평택도시공사	62	춘천도시공사
63	포천도시공사	63	통영관광개발공사
64	하남도시공사	64	파주도시관광공사
65	한국개발연구원	65	평택도시공사
66	한국공항공사	66	포천도시공사
67	한국관광공사	67	하남도시공사
68	한국교통연구원	68	한국개발연구원
69	한국국토정보공사	69	한국공항공사

현 행		개 정 안	
70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70	한국관광공사
71	한국농어촌공사	71	한국교통연구원
72	한국도로공사	72	한국국토정보공사
73	한국부동산원	73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74	한국산업단지공단	74	한국농어촌공사
75	한국섬진흥원	75	한국도로공사
76	한국수자원공사	76	한국부동산원
7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77	한국산업단지공단
78	한국자산관리공사	78	한국섬진흥원
7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79	한국수자원공사
80	한국지방재정공제회	8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81	한국철도공사	81	한국자산관리공사
82	한국환경공단	8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83	한국환경연구원	83	한국지방재정공제회
84	함안지방공사	84	한국철도공사
85	화성도시공사	85	한국환경공단
		86	한국환경연구원
		87	함안지방공사
		88	화성도시공사

I. 규제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LH 직원 등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에게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21.10.2. 시행) 개정
- 개정법에서 위임한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구체화하고, 이에 따라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를 고시하여 적용 대상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의 지정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령 제3조제4항제3호의 공직유관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사업과 토지개발사업(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제8호)을 전담하는 지방공사·공단으로서 15개 특별·광역시도 도시개발공사를 정함 ○ 시행령 제3조제5항제20호의 공직유관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제출한 '부동산 유관부서를 두고 있는 공직유관단체'를 취합·조정
규제대안1	대안명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지정 고시
	내용	부동산 관련 업무 수행하는 전 부서 직원에게 재산등록의무 부담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재산등록의무를 부담하는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	부담하는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및 이해관계자의 재산등록 의무 부담 발생

	단체를 지정한 것으로 목적과 수단 비례적 타당성을 확보함	
규제대안1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전 직원에 대해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여 부정한 재산증식을 사전에 예방 가능	부동산 관련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운 부서 직원도 재산등록의무를 부담하는 등 비례성의 문제 우려
규제대안2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 단체 변동사항 조사 (9.15.~10.27.)	이견 없음	
공직유관단체임직원	행정예고 예정 (11.22. ~ 12.11.)		

3. 규제목표

-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고, 공직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사전에 예방

II. 규제 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공직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 재산등록의무를 부담하는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를 지정한 것으로 목적과 수단 비례적 타당성을 확보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 매년 12월 31일까지 재검토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 체계		
네거티브 리스트	O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공직유관단체를 한정적으로 열거
사후 평가관리		
규제 샌드박스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해외사례: 주요 국가별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현황

구 분	재산등록 의무자	등록범위	등록재산
미 국	일부 공무원 및 의회의원 사법부 및 공직선거후보자	본인, 배우자 부양자녀(21세이하)	소득, 재산, 선물, 부채등
멕시코	일부 공무원, 의회의원 및 사법부	본인, 배우자 부양자녀	모든 재산
브라질	모든 공무원	본인	모든 재산
프랑스	일부 공무원 및 의회의원 공직선거후보자	본인	
영 국	의회의원	본인	직업, 직위, 활동 등
독 일	의회의원	본인	직업, 직위, 활동 등
말레이시아	모든 공무원	본인	모든 재산
싱가포르	모든 공무원	본인, 배우자 부양자녀	소유 재산
대 만	일부 공무원 및 의회의원 사법부 및 공직선거후보자	본인, 배우자 부양자녀(미성년자)	모든 재산
필리핀	모든 공무원	본인, 배우자 부양자녀(18세이하)	모든 재산

○ 타법사례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6조(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 개발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관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21.3월 LH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 사태 이후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3.29.),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입법예고(6.17.~7.27.) 및 부동산 유관부서 지정계획 조사(7월) 등을 통해 관련 공직유관 단체 임직원은 규제 방향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였고,
- 이에 따라 2021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가 고시되어 시행되었고, 2024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를 고시하기에 앞서 각 기관에 변동사항을 조사하는 등 검토 및 소통 과정을 충분히 거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준수 가능성이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공직자의 재산등록에 관한 제도 및 재산등록 전산시스템은 기존에 이미 구축되어 있어 집행가능성이 높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해당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공직자윤리법(“21.4.1. 공포) 및 시행령 개정(“21.9.24. 공포 예정)
- 2021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고시 시행(“21.10.2.)
- 2023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고시 시행(“22.12.30.)
- 2024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변동사항 조사(“23.9.15.~10.27.)

2. 향후 평가계획

-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검토

3. 종합결론

- 국민생활에 밀접한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이해충돌상황을 방지하고 공직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으로서,
 - 행정·재정·기술적으로 추가적 사회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 국민의 공직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 등의 편익이 더욱 큼

별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3	2024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지정 고시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지정 고시 >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간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활동제목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지정
비용항목	재산등록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부동산 유관부서에 근무하는 동안 재산등록을 하는 등 의무사항 발생

② 피규제 일반국민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일반국민
활동제목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지정
편익항목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부동산 관련 공직자의 이해충돌상황을 방지하고 공직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사전에 예방하여 공직에 대한 신뢰 제고